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 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2월 28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#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노인전문병원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노인전문병원의 위탁·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함(안 제4조).

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로 규정된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위탁 기간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,

### 주요 내용은

- 제4조 중 위탁기간 10년 이내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음.

#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은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고 관리위탁 재산의 위탁기간에 관하여는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어, 이를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